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Recognition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School Library

홍재현(Jae-Hyun Hong)*

〈 목 차 〉

| | |
|---------------------------|--|
| I. 서론 | 1. 일반적 특성 및 현황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2.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저작권 교육 |
| 1.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 전·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분석 |
| 2.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변화 | 3.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
| 3. 관련 연구 | 4.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V.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 개선방안 |
| 1. 연구 대상 및 내용 | |
| 2. 연구 방법 | VI. 결론 및 제언 |
| IV.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 분석 | |

초록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학생, 교사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본 설문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인식

ABSTRACT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s the information manager of school library as well as the teacher who take charge of a study. The basic knowledge of copyright law is needed to supply lawful and safe information service to students and teaching staffs in school. In order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to have a copyright knowledge, the actual proof research to analyze the copyright recognition degree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s necessary. The survey study measured the recognition degree against copyright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who participate to 2006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1 class qualification annual study and training process. As a result of the question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ed concretely improved plans to raise the copyright recognition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Key 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Copyright, Copyright Law, Copyright Recognition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hong@joongbu.ac.kr)

• 접수일: 2007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 론

최근 들어 학교도서관은 그 설치와 더불어 도서관 시스템 및 환경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서교사의 배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2005년 4월 1일 현재 총 10,826 학교 중 89.6%에 달하는 9,69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¹⁾ 2001년부터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면서 학교도서관에 설치되기 시작한 디지털자료실은 2001년 96개교, 2002년 96개교, 2003년 130개교, 2004년 114개교씩으로 그 구축이 늘어나고 있다.²⁾ 뿐만 아니라 DLS(Digital Library System)도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9,649개교의 57%에 해당하는 5,504개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³⁾ 한편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는 2005년 4월까지 총 313명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 9월 30일 '학교서관 정상화를 및 사서교사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학교도서관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사서교사 배치 요구의 응집력에 힘입어 2006년 154명에 이르는 많은 사서교사가 임용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자격제도도 「도서관법」과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법률 제7068호)의 제21조에 따라 1급 사서교사와 2급 사서교사의 구조체계와, 그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로 학교도서관의 외형적인 발전과 상황이 개선되는 동안 학교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및 사서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작용하는 저작권법도 2000년⁴⁾과 2003⁵⁾년의 부분 개정, 그리고 2006년⁶⁾의 전면 개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복잡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아직도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하고 사서교사 배치 문제에 우선하는 등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낮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상의 변화 및 법 준수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교도서관 현황, 2002~2005(매년 4월 1일 기준)

| 구분 연도 | 학교수 | 학교 도서관수 | 설치율 (%) | 리모델링 학교수 | 사서 교사수 (명) | 사서직 수 (명) | 비정규직 사서수 (명) | 학생 1인당 예산 (천원) | 학생 1인당 장서수 (권) | 도서관당 대출자수 (명,1일평 균) | 도서관당 대출책수 (권,1일평 균) | 도서관당 이용자수 (명,1일평 균) |
|----------|--------|------------|------------|-------------|------------------|-----------------|--------------------|-------------------------|-------------------------|------------------------------|------------------------------|------------------------------|
| 2002 | 10,172 | 8,181 | 80.4 | - | 164 | 20 | 880 | 5.9 | 5.5 | 41 | 56 | 75 |
| 2003 | 10,503 | 8,657 | 82.4 | 1,259 | 232 | 39 | 1,135 | 6.6 | 6.5 | 49 | 72 | 94 |
| 2004 | 10,649 | 9,248 | 86.8 | 1,260 | 284 | 46 | 1,685 | 10.7 | 7.5 | 52.9 | 81 | 100.1 |
| 2005 | 10,826 | 9,696 | 89.6 | 1,265 | 313 | 57 | 1,881 | 10.8 | 8.32 | 59 | 96 | 11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 2)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교육정보화백서(서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pp.163-168.
- 3) 한국도서관협회, 2005 한국도서관연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5), p.24.
- 4)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제6134호). 2000년 7월 1일 시행.
- 5)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 6881호). 2003년 7월 1일 시행.
- 6) 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 전부 개정(법률 제8101호). 2007년 6월 29일 시행.

그런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쇄매체는 물론 비디오, CD-ROM, 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사서교사들의 정보서비스 제공, 교수 - 학습활동의 진행 및 참여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 때 사서교사가 저작권법의 규정을 잘 모르거나 저작권 존중에 대한 낮은 의식을 갖고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수 -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원에게 저작권 존중 및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서교사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⁷⁾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등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초중등 학교시절에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가 제공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는 학생들에게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존중 및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자세와 의식을 심어 주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인쇄 기반 매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매체를 안전하게 서비스 함은 물론 교사로서 수업 진행에서 다양한 정보매체를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원활히 운영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충실히 갖추는 것을 더욱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자격제도 및 배치, 학교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및 운영, 정보활용교육의 범위 및 계열 설정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고,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인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서교사들의 저작권 인식의 실제 및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사서교사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2006년 10월 4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것, 법률 제

7) Rebecca P. Butler, "Web Page Construction and Copyright Law: How Much Do I Need to Know," *Knowledge Quest*, Vol.32, No.4(Mar/Apr, 2004), p.4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8029호, 시행일 2007. 4. 5)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⁹⁾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둘째,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셋째,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넷째,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이용 제공 다섯째,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여섯째,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¹⁰⁾를 수행한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와 2급 사서교사 모두 포함)¹¹⁾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및 전문(특수)도서관의 일반 사서와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직접 또는 협력하여 수업을 전개한다. 그런 점에서 사서교사는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로서, 그리고 도서관 관리자로서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매체를 대상으로 교사, 학생 및 직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서교사는 다양한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에 관한 상식을 두루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서교사는 저작권법의 기본 지식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상의 도서관면책 규정인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와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크게 내용이 변경된 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23조에 규정되었음)의 법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저작권의 개념에 관한 기본 지식을 충실히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부딪치는

- 8) 초중등교육법의 제2조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9) 도서관법 제2조의 6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주된 목적을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0) 도서관법, 제38조.
11)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자격 요건은 도서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동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1급 사서교사와 2급 사서교사의 가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별 ＼ 자격 | 사서교사 (1급) | 사서교사 (2급) |
|----------------|---|--|
| 초등학교 |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 | 1.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현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자 |
| 중등학교 | | |
| 특수학교 | | |

기본적인 저작권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일반적인 저작권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변화

최근 들어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 및 협력 수업, 그리고 원격수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서교사가 알아 두어야 할 저작권법의 제한규정의 내용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행 저작권법 제23조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2006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서 제25조로 바뀌면서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들이 신설된 것이다. 2006년 개정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것이므로, 사서교사들은 앞으로 본 규정의 의미와 그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을 제외한 초·중등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석한다.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조문의 내용을 현행법과 개정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 저작권법 조문

| 현행법 (제23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개정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
| <p>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 <p>① 좌동</p> <p>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현행법에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및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업과 관련한 ‘전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목적’이란 용어는 통상 ‘수업목적’으로 해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다도 넓은 범위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¹²⁾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교육콘텐츠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e-러닝산업 등이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¹³⁾라는 반대급부 또한 컸을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교육목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화 하기 위해 그 용어를 ‘수업목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나아가 사서교사로 하여금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은 물론 ‘전송’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유 이용의 길을 확장시켜 준 것이다. 더욱이 개정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은 파동적으로 교사의 자료 제공만으로 한정될 수 없고 수업을 받는 학생도 자료를 제공하는 쌍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교육자도 수업과 관계된 리포트 등을 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¹⁴⁾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대신 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동조 제10항).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는 본 조항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조치는 전부개정을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¹⁵⁾ 따라서 개정법의 본 조항과 앞으로 개정될 저작권법 시행령의 보호조치 추가내용에 입각해서 사서교사들은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을 행하는 경우 권리 보호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내지 특징은 개정법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확대(제25조 제2항, 제3항, 제10항)하여 디지털 시대

12) 김현철, 디지털 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저작재산권 제한을 중심으로(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p.126.

13)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울 : 문화관광부, 2006), p.24.

14) 전케서, p.25.

15) 저작권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007년 3월 9일 국립민속박물과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지만, 전부 개정을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를 맞아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한 전송'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허용한 점과, 이와 아울러 여기에서 학생까지 포함시켜 수업과 연관하여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을 규정한 제28조는 2006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시점에서는 본 2006년 개정법이 나오기 이전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내용은 각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고, 분석도 이에 입각하여 실시하였다.

3. 관련 연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설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 저작권 교육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관련된 주요 연구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성은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에 관한 연구」¹⁶⁾에서 사서교사 양성 교육의 영역을 도서관 운영 영역, 독서 영역, 교수 학습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서교사 자격 인증제도의 고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 영역에서는 기능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철학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보완할 것을,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교과과정 운영과 수업 운영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저작권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병기는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설정에 관한 연구」¹⁷⁾에서 일본,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을 설정하였다.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영역, 정보탐색과 자료의 선정 영역, 정보의 분석과 이해 영역, 정보의 종합과 표현 영역,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영역이라는 5개 대단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 고학년(4-6), 중학교(1-3), 고등학교(1-3)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에 따른 계열을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민주사회와 지적 자유,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정보이용, 인터넷

16) 김종성,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pp.135-159.

17) 이병기, "학교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범위와 계열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제1호(2005), pp.45-74.

과 정보윤리를 정보활용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 하겠다.

홍재현(2002)은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¹⁸⁾에서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전자잡지,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일부에서 원격교육의 면책에 대한 새로운 법인 미국의 'TEACH Ac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었다.

한편 국외의 경우에도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저작권 관리, 사서교사가 인지해야 할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공정사용 및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규정, 저작물의 이용허락, 교육용 미디어의 공정사용 지침,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및 담당직원을 위한 특수한 저작권 지침,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내용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설문 조사의 대상자는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기관으로 선정된 K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수원에서의 2006년 사서교사 1급 연수 과정에 참여한 52명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연수 과정에서 필자는 '저작권법의 이해와 학교도서관'이라는 과목명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의하였는데, 2006년 7월 31일에 3시간, 8월 7일에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간으로 총 8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 이전과 본 자격연수 과정 이후의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설문지는 강의 끝 시간에 배포하였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설문 문항에 각각 응답하도록 설명한 후,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시간 내에 설문지의 작성은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본 자격연수 과정의 반장을 통해 수합하도록 하고 다음 날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총 50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지만, 회신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48부(약 92.3%)를 본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가한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자격 연수의 교육 전·후로 구분하여 저작권의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서교사 전체가 아닌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가한 사서교사로 조사 집단을 한정하였음을 제한점으로 밝힌다.

18) 홍재현,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3권, 제4호(2002), pp.57-84.

〈표 2〉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 조사를 위한 기준 항목*

| 조사 기준 | 세부 조사 내용 |
|------------------------|---|
|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
| 저작권 보호 및 지식의 필요성 |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 지식의 필요성 |
|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의미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
|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해 |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종류 |
|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이해 | 학교 교육 복제 등에의 이용(제23조) 규정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규정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28조) 규정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도서관에 적용되는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해 |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도서관 행위 보상금의 기준과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약정 체결의 내용 및 주의사항 |
| 기타 | 기술조치를 포함한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민·형사상의 제재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저작권 관련 문제 및 애로사항,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의견 |

*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저작권 교육 전·후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문항의 내용과 측정 척도는 동일함.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1) 저작권에 관한 교육 경험 유무 및 디지털자료실 설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
- (2)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 이전과 자격연수 과정 이후로 대구분한 후, 각각 사서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저작권 지식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 측정하기 위한 26개의 문항.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은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저작권보호 및 지식의 필요성,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이해, 도서관에 적용되는 보상금 제도에 대한 이해, 기타로 중분류 한 다음, 그 안에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각 26개의 질문 문항은 동일한 조사 대상

자에게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교육 이전과 자격연수 교육 이후로 구분된 구조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3)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에서의 저작권 교육 및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2개 문항.
- (4) 학교도서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 (5)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요소들에 대한 문항.

각 문항의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에 대한 측정은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5로, “그렇다”는 4로, “보통”은 3으로, “그렇지 않다”는 2로, “매우 그렇지 않다”는 1로 코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분석은 설문지 각 항목별로 기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론 통계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 (1)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은 아래에 제시한 바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첫째, 저작권 관련 교육 및 디지털자료실 설치 현황
 - 둘째,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의 저작권 교육 이전과 저작권 교육 후의 저작권 인식도
 - 셋째,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 근무도서관별,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끝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도 연령별, 근무도서관별,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IV.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 분석

1. 일반적 특성 및 현황 분석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분석 대상자는 총 48명이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비로 볼 때 여성이 81.3%로 월등히 많았고 무응답이 10.4% 그리고 남성이 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58.3%로 가장 많았고, 31세-40세(22.9%), 41세 이상(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도서관별로는 고등학교도서관이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교도서관(29.2%), 초등학교도서관(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근무년도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의 근무라는 응답이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1-15년(12.5%), 6-10년(10.4%), 16년 이상(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4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남 | 4 | 8.3 |
| | 여 | 39 | 81.3 |
| | 무응답 | 5 | 10.4 |
| 연령 | 30세 이하 | 28 | 58.3 |
| | 31-40세 | 11 | 22.9 |
| | 41세 이상* | 9 | 18.8 |
| 근무도서관 | 초등학교도서관 | 9 | 18.8 |
| | 중학교도서관 | 14 | 29.2 |
| | 고등학교도서관 | 25 | 52.1 |
| 근무년수 | 5년 이하 | 34 | 70.8 |
| | 6-10년 | 5 | 10.4 |
| | 11-15년 | 6 | 12.5 |
| | 16년 이상 | 3 | 6.3 |

* 41세 이상에는 51세 이상의 1명이 포함되었음.

조사대상자들이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에 참여하기 이전에 대학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본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이전의 다른 연수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대학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83.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대학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저작권 교육 경험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대학 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 경험 유무 | 있다 | 8 | 16.7 |
| | 없다 | 40 | 83.3 |
| | 합 계 | 48 | 100.0 |
| 연수 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 경험 유무 | 있다 | 10 | 20.8 |
| | 없다 | 38 | 79.2 |
| | 합 계 | 48 | 100.0 |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에 참가하기 전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타 연수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수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9.2%로 매우 높았지만, '연수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0.8%로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10명 중 8명이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교육에 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자료실¹⁹⁾의 설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 '예'가 50.0%, '설치 중'이 6.3%라고 응답하였지만, '아니오'도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디지털자료실 설치 현황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디지털 자료실 설치 여부 | 예 | 24 | 50.0 |
| | 아니오 | 21 | 43.8 |
| | 설치 중 | 3 | 6.3 |
| | 합 계 | 48 | 100.0 |

2.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저작권 교육 전·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이 인식하는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

19)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교도서관 내에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첨단형 학교도서관을 의미한다. 변우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과 효과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p.9.

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에 대하여 사서교사들은 교육 전에는 41.7%, 2.1%로 응답하였고, 교육 후에는 58.3%, 6.3%로 응답하였다. 사서교사들이 본 자격연수의 교육 후에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 더 높아진 인식을 보인 것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 구 분 | 교育 전 | 교育 후 | 교육 효과 |
|-------------|-----------|-----------|----------------|
|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지 않다 | 6(12.5) | 4(8.3) 4.2▼ |
| | 보통 | 20(41.7) | 13(27.1) 14.6▼ |
| | 그렇다 | 20(41.7) | 28(58.3) 16.6▲ |
| | 매우 그렇다 | 1(2.1) | 3(6.3) 4.2▲ |
| | 무응답 | 1(2.1) |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나. 저작권 보호 및 지식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전에는 '보통'이 47.9%, '그렇다'는 41.7%, '매우 그렇다'는 2.1%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2.5%의 응답률을 보여 교육 전보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20.8%나 증가되었고, '매우 그렇다'도 교육 전보다 증가되었다.

<표 7>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구 분 | 교育 전 | 교育 후 | 교육 효과 |
|-------------|-----------|-----------|----------------|
|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그렇지 않다 | 3(6.3) | . |
| | 보통 | 23(47.9) | 13(27.1) 20.8▼ |
| | 그렇다 | 20(41.7) | 30(62.5) 20.8▲ |
| | 매우 그렇다 | 1(2.1) | 5(10.4) 8.3▲ |
| | 무응답 | 1(2.1) |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저작권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교육 전에는 52.9%, 22.9%로 응답하였지만, 교육 후에는 60.4%, 16.7%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사서교사들이 자격연수의 교육 전·후에 별 차이 없이 저작권 지식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된다.

〈표 8〉 저작권 지식의 필요성

| 구 분 | | 교육 전 | 교육 후 | 교육 효과 |
|-------------|-----------|-----------|-----------|-------|
| 저작권 지식의 필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 | 그렇지 않다 | 1(2.1) | . | 2.1 ▼ |
| | 보통 | 11(22.9) | 11(22.9) | |
| | 그렇다 | 25(52.1) | 29(60.4) | 8.3 ▲ |
| | 매우 그렇다 | 11(22.9) | 8(16.7) | 6.2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다.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의미, 저작권법의 정의와 목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자유이용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점 등을 본 자격연수 교육 전·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31.3%, ‘매우 그렇다’가 0.0%로 낮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8.8%, ‘매우 그렇다’가 8.3%로 그 이해도가 매우 향상되었다.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29.2%, ‘매우 그렇다’가 2.1%로 나타났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75.0%로, ‘매우 그렇다’가 8.3%로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에 대한 이해도도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18.8%, ‘매우 그렇다’가 2.1%로 낮았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2.5%, ‘매우 그렇다’가 8.3%로 증가하였다.

〈표 9〉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 구 분 | | 교육 전 | 교육 후 | 교육 효과 |
|----------------------------|-----------|-----------|-----------|--------|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의미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 | 그렇지 않다 | 13(27.1) | 1(2.1) | 25.0 ▼ |
| | 보통 | 19(39.6) | 10(20.8) | 18.8 ▼ |
| | 그렇다 | 15(31.3) | 33(68.8) | 37.5 ▲ |
| | 매우 그렇다 | . | 4(8.3) | 8.3 ▲ |
| | 무응답 | 1(2.1) | . | |
|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 | 합 계 | 48(100.0) | 48(100.0) | |
| | 매우 그렇지 않다 | 2(4.2) | . | 4.2 ▼ |
| | 그렇지 않다 | 10(20.8) | 2(4.2) | 16.6 ▼ |
| | 보통 | 21(43.8) | 6(12.5) | 31.3 ▼ |
| | 그렇다 | 14(29.2) | 36(75.0) | 45.3 ▲ |
| | 매우 그렇다 | 1(2.1) | 4(8.3) | 6.2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 | | | | |
|------------------------------|-----------|-----------|-----------|--------|
| | 매우 그렇지 않다 | 3(6.3) | . | 6.3 ▼ |
|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에 대한 이해 | 그렇지 않다 | 14(29.2) | 1(2.1) | 27.1 ▼ |
| | 보통 | 21(43.8) | 13(27.1) | 16.7 ▼ |
| | 그렇다 | 9(18.8) | 30(62.5) | 43.7 ▲ |
| | 매우 그렇다 | 1(2.1) | 4(8.3) | 6.2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3(6.3) | . | 6.3 ▼ |
| | 그렇지 않다 | 14(29.2) | 1(2.1) | 27.1 ▼ |
| | 보통 | 23(47.9) | 11(22.9) | 25.0 ▼ |
| | 그렇다 | 8(16.7) | 30(62.5) | 45.8 ▲ |
| | 매우 그렇다 | . | 6(12.5) | 12.5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3(6.3) | . | 6.3 ▼ |
| | 그렇지 않다 | 17(35.4) | 3(6.3) | 29.1 ▼ |
| | 보통 | 18(37.5) | 10(20.8) | 16.7 ▼ |
| | 그렇다 | 10(20.8) | 29(60.4) | 39.6 ▲ |
| | 매우 그렇다 | . | 6(12.5) | 12.5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3(6.3) | . | 6.3 ▼ |
| | 그렇지 않다 | 19(39.6) | 4(8.3) | 31.3 ▼ |
| | 보통 | 17(35.4) | 7(14.6) | 20.8 ▼ |
| | 그렇다 | 8(16.7) | 31(64.6) | 47.9 ▲ |
| | 매우 그렇다 | 1(2.1) | 6(12.5) | 10.4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5(10.4) | . | 10.4 ▼ |
| | 그렇지 않다 | 16(33.3) | 4(8.3) | 25.0 ▼ |
| | 보통 | 14(29.2) | 5(10.4) | 18.8 ▼ |
| | 그렇다 | 11(22.9) | 30(62.5) | 39.6 ▲ |
| | 매우 그렇다 | 2(4.2) | 9(18.8) | 14.6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16.7%, '매우 그렇다'가 0.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2.5%, '매우 그렇다'가 12.5%로 이해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도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20.8%, '매우 그렇다'가 0.0%로 나타났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0.4%, '매우 그렇다'가 12.5%로 나타났다.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16.7%, '매우 그렇다'가 2.1로 낮았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4.6%, '매우 그렇다'가 12.5%로 나타났다.

끝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22.9%, '매우 그렇다'가 4.2%에 불과했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2.5%, '매우 그렇다'가 18.8%로 크게 증가하였다.

라.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우리가 준수해야 할 법은 국내법인 한국 저작권법이지만, 국제적인 협약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국제협약과의 조화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교육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33.3%의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교육 전보다 47.9% 증가한 수치인 64.6%로 나타났다.

〈표 10〉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

| 구 분 | 교육 전 | 교육 후 | 교육 효과 |
|---------------------------|-----------|-----------|-----------|
|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9(18.8) | 18.8▼ |
| | 그렇지 않다 | 16(33.3) | 27.0▼ |
| | 보통 | 14(29.2) | 10.4▼ |
| | 그렇다 | 8(16.7) | 47.9▲ |
| | 매우 그렇다 | 1(2.1) | 8.3▲ |
| | 합 계 | 48(100.0) | 48(100.0) |

마.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대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갖는 재산적·경제적 권리로서, 그 범주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상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그 범주가 나누어진다.

〈표 1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해

| 구 분 | 교육 전 | 교육 후 | 교육 효과 |
|----------------------------|-----------|-----------|-----------|
|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4(8.3) | 8.3▼ |
| | 그렇지 않다 | 18(37.5) | 31.2▼ |
| | 보통 | 13(27.1) | 10.4▼ |
| | 그렇다 | 12(25.0) | 31.3▲ |
| | 매우 그렇다 | 1(2.1) | 18.7▲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6(12.5) | 12.5▼ |
| | 그렇지 않다 | 17(35.4) | 29.1▼ |
| | 보통 | 13(27.1) | 10.4▼ |
| | 그렇다 | 10(20.8) | 33.4▲ |
| | 매우 그렇다 | 1(2.1) | 20.8▲ |
| | 무응답 | 1(2.1) |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표 11〉에서 보듯이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종류」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37.5%, ‘매우 그렇지 않다’가 8.3%로 낮은 인식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반대로 ‘그렇다’가 56.8%, ‘매우 그렇다’가 20.8%로 인식률이 높아졌다.

또한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종류」의 이해도도 교육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35.4%, ‘매우 그렇지 않다’가 1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54.2%)와 ‘매우 그렇다’(22.9%)에 응답한 결과가 77.1%로서 월등히 이해도가 높아졌다.

바.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과 동시에 저작자의 재산상의 독점권을 일정한 조건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용과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의 제한은 협의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허락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인 보호기간의 규정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중에서 사서교사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규정으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28조) 규정을 조사 대상 규정으로 선정하여 그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법정 허락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 정도도 측정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결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수업진행과 관련하여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12.5%, ‘매우 그렇다’가 4.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범주 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수치로서, 사서교사들이 이처럼 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54.2%, ‘매우 그렇다’가 18.8%로 눈에 띠게 상승했다. 결국 본 분석 결과로서 자격연수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 전의 사서교사들 대다수가 본 규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사서교사의 저작권 교육 과정에서는 이 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를 살펴보면 ‘그렇다’가 18.8%, ‘매우 그렇다’가 2.1%에 불과하였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52.1%, ‘매우 그렇다’가 16.7%로 높아졌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한 이해도도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14.6%, ‘매우 그렇다’가 2.1%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과 동일하게 낮게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50.0%, ‘매우 그렇다’가 12.5%로 이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본 규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의 복제 및 전송 행위에 면책을 부여해 준 것으로서 2003년에 개정되었다. 벌써 그 법 적용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의 사서교사들이 이에 대해 매우 낮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법정 허락」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18.8%, '매우 그렇다'가 6.3%이었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56.3%, '매우 그렇다'가 16.7%로 증가하였다.

끝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교육 전에는 '그렇다'가 20.8%, '매우 그렇다'가 6.3%로 낮았지만, 교육 후에는 '그렇다'가 62.5%, '매우 그렇다'가 18.8%로 나타났다.

〈표 12〉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이해

| 구 분 | 교育 전 | 교육 후 | 교육 효과 |
|--|-----------|-----------|-----------|
| 학교 교육 목적 등 에의 이용(제23조) 규정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8(16.7) | 16.7 ▼ |
| | 그렇지 않다 | 13(27.1) | 25.0 ▼ |
| | 보통 | 19(39.6) | 14.6 ▼ |
| | 그렇다 | 6(12.5) | 41.7 ▼ |
| | 매우 그렇다 | 2(4.2) | 14.6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규정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8(16.7) | 16.7 ▼ |
| | 그렇지 않다 | 15(31.3) | 23.0 ▼ |
| | 보통 | 15(31.3) | 8.4 ▼ |
| | 그렇다 | 9(18.8) | 33.3 ▲ |
| | 매우 그렇다 | 1(2.1) | 14.6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28조) 규정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7(14.6) | 14.6 ▼ |
| | 그렇지 않다 | 20(41.7) | 39.6 ▼ |
| | 보통 | 13(27.1) | 8.3 ▲ |
| | 그렇다 | 7(14.6) | 35.4 ▲ |
| | 매우 그렇다 | 1(2.1) | 10.4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법정 허락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7(14.6) | 14.6 ▼ |
| | 그렇지 않다 | 15(31.3) | 29.2 ▼ |
| | 보통 | 13(27.1) | 2.1 ▼ |
| | 그렇다 | 9(18.8) | 37.5 ▲ |
| | 매우 그렇다 | 3(6.3) | 10.4 ▲ |
| | 무응답 | 1(2.1) | · |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5(10.4) | 10.4 ▼ |
| | 그렇지 않다 | 12(25.0) | 22.9 ▼ |
| | 보통 | 18(37.5) | 20.8 ▼ |
| | 그렇다 | 10(20.8) | 41.7 ▲ |
| | 매우 그렇다 | 3(6.3) | 12.5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사. 도서관에 적용되는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해

2003년 개정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제도에 대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행위, 보상금의 기준과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보상금 약정체결 내용이라는 4가지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행위」와 「보상금의 기준과 보상금액」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10.4%, 「매우 그렇다」가 4.2%로 14.6%라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보상금 약정 체결 내용」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각각 14.6%, 18.8%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 전의 대부분의 사서교사들은 보상금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거의 없음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서 체결 현황을 살펴볼 때 2007년 1월 말 현재 약정을 체결한 약 550개 도서관 중 학교도서관이 1개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²⁰⁾

〈표 13〉 도서관에 적용되는 보상금제도에 대한 이해

| 구 분 | 교육 전 | 교육 후 | 교育 효과 |
|-----------------------------------|-----------|-----------|-----------|
|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행위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9(18.8) | 18.8 ▼ |
| | 그렇지 않다 | 17(35.4) | 29.1 ▼ |
| | 보통 | 15(31.3) | 2.1 ▼ |
| | 그렇다 | 5(10.4) | 41.7 ▲ |
| | 매우 그렇다 | 2(4.2) | 8.3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보상금의 기준과 보상금액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10(20.8) | 20.8 ▼ |
| | 그렇지 않다 | 17(35.4) | 29.1 ▼ |
| | 보통 | 14(29.2) | 2.1 ▲ |
| | 그렇다 | 5(10.4) | 39.6 ▲ |
| | 매우 그렇다 | 2(4.2) | 8.3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11(22.9) | 22.9 ▼ |
| | 그렇지 않다 | 19(39.6) | 31.3 ▼ |
| | 보통 | 11(22.9) | 8.4 ▲ |
| | 그렇다 | 7(14.6) | 37.5 ▲ |
| | 매우 그렇다 | . | 8.3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 센터와의 보상금 약정체결 내용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9(18.8) | 16.7 ▼ |
| | 그렇지 않다 | 19(39.6) | 37.5 ▼ |
| | 보통 | 11(22.9) | 14.6 ▲ |
| | 그렇다 | 9(18.8) | 27.0 ▲ |
| | 매우 그렇다 | . | 12.5 ▲ |
| | 합 계 | 48(100.0) | 48(100.0) |

20)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http://www.copycle.or.kr>> [cited 2007. 2. 2]

그러나 교육 후에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행위」, 「보상금의 기준과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보상금 약정체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64.6%, 62.5%, 60.4%, 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 기타

기타 부분에서는 기술조치를 포함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민·형사상의 제재,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로서 부딪치는 저작권 관련 문제나 애로사항, 그리고 본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14>에서 보듯이 「기술조치를 포함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민·형사상의 제재」에 대한 교육 전의 이해도는 '그렇다'가 10.4%,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교육 전 사서교사들은 '그렇다'가 20.8%, '매우 그렇다'가 2.1%로 낮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한편 「저작권 관련 문제 및 애로사항,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응답자들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서교사만이 본 질문에 답변하였다. 많은 의견을 받지는 못했지만, 회수된 내용은 실제 대다수의 사서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이 작성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나 애로사항이 없음.
- 내가 하는 행동이 저작권에 위배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음.
- 문제집의 복사 - 학생 및 교사, 선생님들의 논문 전체 즉 사적 이용물에 대한 복사 시 저작권 위배가 되는지 걱정됨.
- 내용이 너무 광범위함. 학교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면 함.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3조)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조금 더 포함되었으면 함. 또한 '~를 할 수 없다' 보다는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해 주었으면 함.
- 그동안 학교도서관은 저작권과 무관한 걸로 인식해 왔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저작권과 학교도서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14〉 기타

| 구 분 | 교育 전 | 교育 후 | 교육 효과 |
|----------------------------------|-----------|-----------|----------------|
| 기술조치를 포함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8(16.7) | 1(2.1) 14.6▼ |
| | 그렇지 않다 | 21(43.8) | 2(4.2) 39.6▼ |
| | 보통 | 14(29.2) | 20(41.7) 12.5▲ |
| | 그렇다 | 5(10.4) | 21(43.8) 33.4▲ |
| | 매우 그렇다 | . | 4(8.3) 8.3▲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민·형사상의 제재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7(14.6) | 14.6▼ |
| | 그렇지 않다 | 18(37.5) | 2(4.2) 33.3▼ |
| | 보통 | 12(25.0) | 14(29.2) 4.2▲ |
| | 그렇다 | 11(22.9) | 27(56.3) 33.4▲ |
| | 매우 그렇다 | . | 5(10.4) 10.4▲ |
| | 합 계 | 48(100.0) | 48(100.0) |
|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 대한 이해 | 매우 그렇지 않다 | 9(18.8) | 18.8▼ |
| | 그렇지 않다 | 15(31.3) | 2(4.2) 27.1▼ |
| | 보통 | 13(27.1) | 15(31.3) 4.2▲ |
| | 그렇다 | 10(20.8) | 25(52.1) 31.3▲ |
| | 매우 그렇다 | 1(2.1) | 6(12.5) 10.4▲ |
| | 합 계 | 48(100.0) | 48(100.0) |

저작권 관련 문제 및 애로사항,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의견

이와 같이 본 질문에 응답한 사서교사들이 주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주기를 표명한 바,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대해서만 달랑 알고 저작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나무의 전체 모양을 보지 않고 나무의 일부만을 보고 나무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 및 연수과정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시,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업 시간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빈도 분석

최근 학교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잊은 개정으로 인하여 규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항도 많아졌다. 때문에 사서교사 스스로가

변화된 법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환경에 사서교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서교사들이 대학과정 및 자격 연수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본 교육을 받은 사서교사들은 「대학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다'가 52.1%, '매우 그렇다'가 22.9%로 총 75%라는 매우 높은 인식률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연수 등을 통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그렇다'가 50.0%, '매우 그렇다'도 14.6%로 높았다. 이는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5>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대학 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그렇지 않다 | 1 |
| | 보통 | 11 |
| | 그렇다 | 25 |
| | 매우 그렇다 | 11 |
| | 합 계 | 48 |
| 자격 연수 등을 통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그렇지 않다 | 1 |
| | 보통 | 16 |
| | 그렇다 | 24 |
| | 매우 그렇다 | 7 |
| | 합 계 | 48 |

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근무도서관별·근무년수별 인식 분석

본 교육을 받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연령별·근무도서관별·근무년수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자격 연수 등을 통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근무도서관별·근무년수별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들이 연령·근무도서관·근무년수에 관계없이 대학과정은 물론 자격 연수 등을 통한 저작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4.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빈도 분석

저작권 교육 시간은 총 8시간에 불과하였지만 본 교육을 받은 사서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6.3%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연령별·근무도서관별·근무년수별 인식 분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교사들의 연령별·근무도서관별·근무년수별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사서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저작권 교육 실시에 대하여 연령·근무도서관·근무년수에 관계없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16>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실시의 필요성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그렇지 않다 | . |
| | 보통 | 21 |
| | 그렇다 | 19 |
| | 매우 그렇다 | 8 |
| | 합 계 | 48 |

V.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 개선방안

본 분석 결과에 입각해서, 향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에서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저작권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다룬다. 장래의 사서교사를 꿈꾸는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동안에 학교도서관 운영 등의 정규 관련 교과목 내에서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학교도서관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담당 교과목 교수가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학기별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저작권 전문가로부터 그 내용을 문현정보학 전공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정책의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사서교사 자격연수 외의 다양한 사서교사 연수 과정에서도 사서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학교도서관 및 수업의 운영에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규정은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등의 잣은 개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항이 많다. 빠르게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곧바로 사서교사의 교육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과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본 분석결과에서도 자격연수를 통한 저작권 교육의 효과는 긍정적임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사서교사의 일반 연수 및 자격연수 교육의 비중은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연수과정을 잘 활용하여 저작권 인식의 저변화대를 도모하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3) 사서교사가 저작권에 관한 기본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정 및 연수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의 내용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한다. 본 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사서교사들이 저작권 강의를 처음 들어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여러 명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폭넓게 전달한다.
- (4) 사서교사의 단독 및 협력 수업의 진행을 합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대한 교육 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깊이 있게 다룬다.
- (5)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관련 규정과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보상금제도'를 학교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6) 학교도서관 운영을 다룬 관련 전문 서적들은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기본 지식과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 주제를 포함시켜 저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도서관과 저작권법을 깊이 있게 다룬 저작권 전문서의 개발을 지원한다.
- (7)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및 담당직원을 위한 특수한 저작권 지침(guideline)의 개발이 필요하다.
- (8) 사서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 습득이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임용고시 및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의 이수를 인정하는 시험에서 학교도서관과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2006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 과목(저작권법의 이해와 학교도서관)이 처음으로 시험과목에 포함되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으로서, 향후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사서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정보관리자로서 교사, 학생 및 직원에게 합법적인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학생, 교사 등에게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고 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6년 K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총 50부 중 48부(약 92.3%)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다수의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 교육 전과 교육 후 큰 폭의 저작권 인식률의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 전에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저작권에 대하여 낮은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 후에는 높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서교사들은 대학 및 자격연수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도를 분석한 최초의 실증 연구라는 점이며, 저작권 교육 전과 저작권 교육 후로 각각 대분하여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도를 비교 측정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장에서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과정 및 연수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저작권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사서교사들은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 내에서 저작권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를 강력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서교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도서관이 외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서배치 및 디지털자료실 시스템의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진보적이고 개선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들이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증대시키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